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80호 2011. 8. 25(목)

규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시 규칙 제497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사천시 규칙 제498호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8
훈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시 훈령 제248호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0
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시 고시 제2011-9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12 ○ 사천시 고시 제2011-9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 ... 14 ○ 사천시 고시 제2011-9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 고시 16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2)

규 칙

사천시 규칙 제49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25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별표 1, 별표 2 및 제6조의 별표 3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3)

[별표 1]

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 (제4조 관련)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사 천 읍	선 인 리	5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 선인5리, 선인6리 일원
	정 의 리	3	정의1리, 정의2리, 정의3리 일원
	평 화 리	3	평화1리, 평화2리, 평화3리 일원
	수 석 리	7	수석1리, 수석2리, 수석3리, 수석5리, 수석6리, 수석7리, 수석8리 일원
	사 주 리	2	사주1리, 사주2리 일원
	용 당 리	2	용당1리, 용당2리 일원
	구 암 리	4	구암1리, 구암2리, 구암3리, 구암5리 일원
	장 전 리	2	장전1리, 장전2리 일원
	금 곡 리	1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5	두량1리, 두량2리, 두량3리, 두량5리, 두량6리 일원
정 동 면	고 읍 리	8	고읍, 동계1리, 동계2리, 동계3리, 동계5리, 동계6리, 동계7리, 동계8리 일원
	예 수 리	3	예수, 반응, 염광 일원
	화 암 리	2	화암, 여옥 일원
	풍 정 리	5	풍정1리, 풍정2리, 풍정3리, 풍정5리, 풍정6리 일원
	수 청 리	1	수청 일원
	대 곡 리	1	대곡 일원
	장 산 리	2	노천, 대산 일원
	감 곡 리	2	복상, 감곡 일원
	학 춘 리	2	만마, 학춘 일원
소 곡 리	3	소곡, 가곡, 객방 일원	
사 남 면	죽 천 리	3	죽천, 상죽, 용두 일원
	초 전 리	1	초전 일원
	방 지 리	1	방지 일원
	유 천 리	2	유천, 하동 일원
	월 성 리	15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월성12리, 월성13리, 월성14리, 곡성, 조동 일원
	화 전 리	5	도동, 병둔, 화전, 예의, 구룡 일원
	우 천 리	3	우천, 능화, 연천 일원
	가 천 리	1	가천 일원
	중 천 리	2	중천, 소산 일원
	사 촌 리	3	사촌, 대산, 송암 일원
계 양 리	2	계양, 진분계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4)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용 현 면	선진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양리	1	통양 일원
	신촌리	2	신촌, 종포 일원
	신북리	7	신북,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온정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계리	1	석계 일원
	구월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치리	1	용치 일원
	송지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문리	1	금문 일원
	주문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곡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축 동 면	길평리	0	
	배춘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사다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용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산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호리	1	구호 일원
곤 양 면	성내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의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정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티 일원
	무고리	2	무고, 상평 일원
	맥사리	1	맥사 일원
	송전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진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덕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묵곡리	3	묵단, 묵실, 동천 일원
	홍사리	1	홍사 일원
	가화리	1	가화 일원
	검정리	1	검정 일원
중항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5)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곤 명 면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립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불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서 포 면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량 리	2	구량, 조교 일원
	자 혜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6)

[별표 2]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 (제4조 관련)

행정동명	정 수	통 수
동 서 동	35	35
선 구 동	23	23
동서금동	19	19
별 용 동	40	40
향 촌 동	20	20
남 양 동	20	20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7)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 (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사 천 읍	190
정 동 면	124
사 남 면	104
용 현 면	91
축 동 면	28
곤 양 면	67
곤 명 면	67
서 포 면	66
동 서 동	158
선 구 동	110
동 서 금 동	110
별 용 동	206
향 촌 동	81
남 양 동	85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8)

사천시 규칙 제49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25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금고취급금융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경쟁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지정하는 경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업무관리능력 등”을 “업무관리능력 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이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고의 지정은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9)

제3조제1항제2호와 제5호 중 “자치단체”를 각각 “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 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는”을 “따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으로, “하고,”를 “하고,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되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등을”을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10)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48호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8월 25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11)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제6조제3항 관련)

1. 행정사무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의 정수

부서별	계	행 정 사무원 ①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⑥	환 경 미화원 ⑦
			소계	시 설 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②	현장지도 단속감시 상담인부 ③	자 격 을 요하 는 인 부 ④	안 내 매 표 단순잡역 조무인부 ⑤		
총 계	177	0	79	37	9	13	20	20	78
본 청	소 계	68	48	16	8	5	19	20	
	총 무 과	10	10				10		
	주민생활지원과	3	3			1	2		
	사 회 복 지 과	4	4	4					
	문 화 관 광 과	5	5	5					
	체 육 지 원 과	9	9			4	5		
	건 설 과	2	2	1			1		
	재난안전관리과	1	1	1					
	도 로 교 통 과	24	4		4			20	
	녹 지 공 원 과	9	9	5	4				
	의 회 사 무 국	1	1				1		
직속기관	소 계	14	14	4	1	8	1		
	보 건 소	6	6		1	5			
	농업기술센터	8	8	4		3	1		
사업소	소 계	94	16	16					78
	하수도사업소	16	16	16					
	환 경 사 업 소	78							78
읍면동	소 계	1	1	1					
	서 포 면	-	-	-					
	신수출장소	1	1	1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12)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1-9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 8. 11.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변경승인번호 : 제2011-10호
2. 점용·사용 변경승인년월일 : 2011년 8월 11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삼천포대교 공원내 수상무대(테크 플레이트) 설치로 친수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함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대방동 681-2번지선
5. 점용·사용 변경승인 면적 : 1.218㎡(당초 727㎡)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1년 2월 22일~2026년 2월 21일
7. 점용·사용 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문화관광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 변경승인조건 : 붙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13)

승 인 조 건

1. 피승인자는 승인목적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 목적과 달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피승인자가 면적, 기간 등 동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피승인자는 공익을 위한 국가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타 법령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타 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4. 동 시설물 설치공사 시 발생한 부유물 등에 의해 주변의 마을어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탁 방지막 등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5. 동 시설물 운영 시, 시설물 이용객들이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변 해역의 쓰레기(폐기물) 등은 발생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6.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어업인(이해 당사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7.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및 수려한 미관을 고려하여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8.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즉시 발견된 사실을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9. 본 변경승인은 점용·사용 면적 증가로 인한 승인으로써, 기 승인된 조건 중 지속적 이행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관계법령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승인(기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동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피승인자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12. 상기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본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이 없을 시는 승인조건에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14)

사천시 고시 제2011-9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 8. 23.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1-5호(2011. 6. 17.)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둔덕동 산 96-1번지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하동화력 7, 8호기 가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조사용 온배수 영향
실시간 관측을 위한 바지 설치
- 27㎡ [3대(각 3m× 3m)]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마도동 산 12-5번지선 공유수면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 49-1번지선 공유수면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 48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 공사기간 : 2011. 8. 23. ~ 2012. 6. 16.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15)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 2011. 8. 23.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16)

사천시 고시 제2011-9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 8. 24.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변경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1-10호(2011. 8. 11.)
2.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문화관광과장)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삼천포대교공원내 공유수면에 수상무대(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친수공간 및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및 시민들의 편의도모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대방동 681-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
 - 당 초
 - 데크 플레이트 설치 : [727㎡ (L=44m, B=17m)]
 - 변 경
 - 데크 플레이트 설치 : [1,218㎡ (L=39.8m, B=26.6m)]
6.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일자 : 2011. 8. 24.

사 천 시 공 보

제280호(17)

7.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조건

- 점용·사용 승인(변경)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